

- 우리시 위촉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95. 5.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문변호사 정수의 2분의 1을 시의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추천 요구하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추천요구인원 : 1명
○ 자 격 요 건 : 개업중인 변호사
<근거법규>
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 제1항

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5. 5. 18.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다. 회부일자 : 1995. 5. 18.
라. 상정일자 : 1995. 5. 22.

2. 제안설명요지

- 가. 제안이유
○ 시정소식지발행 편집주간 및 보조원의 복리후생비 지급근거가 없이 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
- 나. 주요골자
○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지급하던 보수 및 수당 이외에 복리후생비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함.
(안 제8조 제3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 음	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외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 음

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392
의 결	95. 5. 30
년 월 일	(제 38 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5. 18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시정소식지발행 편집주간 및 보조원의 복리후생비 지급근거가 없어 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○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지급하던 보수 및 수당 이외에 복리후생비를 지방자치단체에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함.

(안 제8조 제3항)

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(안)

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8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수당과 복리후생비의 범위,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수당규정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 8 조(편집주간 및 보조원) ① (생략)	제 8 조(편집주간 및 보조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수당의 범위,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수당규정을 준용한다.</u>	③ <u>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수당과 복리후생비의 범위, 방법 등은 지방 공무원보수규정및수당규정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.</u>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
부천시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1995. 5. 18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5. 5. 18.

라. 상정일자 : 1995. 5. 22.

2. 제안설명요지